

CHUNIL 주식회사 **천 일**

수 신 방재시설부장 귀하

(경 유)

제 목 품질관리자 인건비 반영 실정보고

1. 귀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엘림중량제2018-120(2018.10.17)호와 관련하여 「중량물제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품질관리자 인건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반영의 적정성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실정보고 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검토의견서 1부.

2. 관련공문 사본 1부. 끝.

중량물제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신 복 민 (인)



담당 분야별기술자 조창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신복민

시행 중량감 제18-258호 (2018.10.17)

접수: (2018. .)

부서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3길 64 (건설사업관리단)

직통 070-4231-2203

팩스 : 02-2212-7918

메일 cwcho3@hanmail.net

검 토 의 견 서

검토건명	품질관리자 인건비 반영 실정보고 건	작성일자	2018. 10. 17.
공 사 명	중량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검토구분	품질관리비
검토기간	2018. 10. 17.~ 2018. 10. 17.	작 성 자	조 창 근
근거공문	엘림중량 제2018-120('18.10.17)호	검 토 자	신 복 민

■ 검토목적

○ 중량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서에 품질시험비만 반영되고 품질관리자 인건비가 누락되어 품질관리자 인건비 반영 실정보고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확인하여 원활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검토기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 검토내용

○ 현황

- 중량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설계서의 부대공에 품질시험비는 반영되어 있으나 품질관리자의 인건비는 누락되어 있는 실정임.

○ 검토 및 대책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규정에 의하면 품질관리비는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반영토록 되어 있음.
- 당 현장 설계서의 공통부대공에 품질시험비는 계획되어 있으나, 품질관리활동비 중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가 누락되어 있음.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기술자의 인건비⇒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의 인건비
 - 인건비 적용은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
 - 품질시험을 하는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어 있어 적용할 수 없음.

- 품질관리자 인건비는 중급품질관리대상 현장으로 중급품질관리자 1인, 초급품질관리자 1인으로 구성되어 **중급품질관리자의 품질관리비를 반영하여야하나 가장 단가가 적은 초급품질관리자를 적용하여 반영코자 함.**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규정에 따라 설계서 누락된 품질관리자 인건비 반영이 가능함.
- 품질관리자 인건비 적용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0조제4항 별표5(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규정에 따라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에 해당하므로 2017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와 2016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및 실지급 품질관리 기술자 노임단가 중 가장 적은 단가로 월 22일 공사기간 26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반영.
 - 엘림토건(주) 실지급 단가(월) : 4,340,000원
 - 대한건설협회 2017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월) : 2,827,440원 ⇨ 적용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7년도 임금실태조사 노임단가(월) : 4,283,114원
- 품질관리자 인건비를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품질관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목표하는 품질 확보로 견실시공이 되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 검토결과 설계서에 누락된 품질관리자 인건비를 반영하여 원활한 품질관리활동을 통하여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실정보고 변경 처리하여 우선 시행토록 하고, 차후 설계변경에 반영코자 함.

▣ 별첨 : 실정보고 현황

2018. 10. 1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신 복 민 (인)



실정보고 현황

▣ 공사비 증감 대비표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직 접 공 사 비	-	67,743	67,743	
간접비 및 부가세	-	18,717	18,717	
도 급 금 액	-	86,460	86,460	
관 급 자 재 비	-	-	-	
총 공 사 비	-	86,460	86,460	

▣ 수량 증감 대비표

공 종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품질관리자 인건비(초급)	개월	-	26	26	

▣ 인건비 대비표

구 분	수 량	단 위	엘림토건(주) 실지급 단가		대한건설협회(적용) 2017년 하반기 노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7년 임금실태조사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품질관리자 인건비 (초급)	22	일	197,409	4,340,000	114,770	2,524,940	152,187	3,348,114	
	26	개월	4,340,000	112,840,000	2,524,940	65,648,440	3,348,114	87,050,964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자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가.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가.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이상	가.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자 1명 이상

비고

1. 건설기술자는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자란의 각각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2.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제53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 가.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 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다.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지방서 등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 라.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현장 품질시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시험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비

가. 품질시험비

- 1)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損料),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 2) 품질시험 인건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건비 산출단위량기준을 토대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 3)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적용하되, 해당 시험에 필요한 공공요금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4) 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5) 장비손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frac{(\text{상각률} + \text{수리율}) \times \text{기계가격}}{\text{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 \times \text{내용연수}} \times \text{장비가동시간}$$

- ※ 기계가격은 구입 가격을 말한다.
- ※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은 2천시간으로 한다.
- ※ 장비가동시간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실제 가동되는 시간을 말한다.
- ※ 내용연수는 기계류 및 계량기는 10년, 유리류 및 금속류 등의 기구는 3년으로 한다.
- ※ 상각률 및 수리율은 다음의 값으로 한다.

장비 구분	상각률	수리율
모터 및 기계	0.8	0.6

제이 지 기계	0.8	0.6
유 리 류	1.0	-
금 속 류	0.9	0.3
계 이 지	1.0	0.6

- 6)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는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을 계상한다.
- 7) 품질시험에 필요한 차량의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 등 각종 경비는 실비 계상한다.
- 8) 외부의뢰 시험은 품질시험비의 한도 내에서 실시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활동비

품질시험비 외에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내역	비고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기술자의 인건비	가) 별표 5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의 인건비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나)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비용	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작성비 나)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다) 부적격보고서와 그 밖의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라)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개정 작성비 마) 품질 관련 문서관리 비용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3)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가) 현장 근로자의 품질 관련 교육에 드는 교재 비용, 초빙강사료 등 각종 비용 나) 교육자료 준비비 다) 품질 관련 행사비 라) 건설기술자 및 시험인력의 외부교육 참가비	품질 관련 교육·훈련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실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적고 실시하는 것만을 말하며, 이를 위한 비용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4) 품질검사비	가) 품질시험 결과의 검사에 드는 비용 나) 내부 품질검사비 다) 구매문서의 적합성 검토 및 구매품의 검사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5)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예비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 [(1)+(2)+(3)+(4)]의 100분의 1을

비용	초과할 수 없다.
----	-----------

3. 품질관리비 사용기준

- 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를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다.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승인(협의)번호
제 365004 호

2017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시증노임단가]

본 조사 보고서는 2017. 9. 1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7.9.1	2017.1.1	2016.9.1	2016.1.1
1061	플랜트 특별 인 부	150,630	150,555	144,628	137,324
1062	플랜트 케이블 전 공	251,985	239,501	232,364	220,324
*1063	플랜트 계 장 공	179,406	167,787	167,232	162,516
**1064	플랜트 덕 트 공	-	152,204	-	148,990
*1065	플랜트 보 온 공	207,593	209,797	218,315	207,683
*1066	제 철 축 로 공	232,456	233,372	233,932	227,911
1067	비 파 괴 시 험 공	244,733	236,018	228,210	215,672
*1068	특 급 품 질 관 리 원	157,891	151,429	145,116	141,211
*1069	고 급 품 질 관 리 원	140,800	134,065	128,297	121,054
*1070	중 급 품 질 관 리 원	128,520	122,121	117,817	113,011
*1071	초 급 품 질 관 리 원	114,770	110,001	105,716	99,902
1072	지 적 기 사	237,460	223,382	223,006	206,417
1073	지 적 산 업 기 사	205,029	192,665	190,980	176,057
1074	지 적 기 능 사	174,452	169,586	163,334	152,797
1075	내 선 전 공	191,336	185,611	179,883	169,202
1076	특 고 압 케이블 전 공	277,601	268,590	258,175	264,903
1077	고 압 케이블 전 공	267,103	249,846	239,949	235,207
1078	저 압 케이블 전 공	212,186	200,964	192,705	199,868
1079	송 전 전 공	371,019	366,921	356,456	351,506
1080	송 전 활 선 전 공	405,013	397,543	377,712	390,035
1081	배 전 전 공	310,429	304,689	300,525	274,706
1082	배 전 활 선 전 공	389,223	387,463	385,385	376,824
1083	플랜트 전 공	192,777	184,766	185,583	180,382
1084	계 장 공	191,809	183,803	179,627	182,853
1085	철 도 신 호 공	216,069	207,768	208,591	213,802
1086	통 신 내 선 공	180,623	174,758	168,154	160,672
1087	통 신 설 비 공	193,302	184,999	186,932	175,822
1088	통 신 외 선 공	247,618	236,760	228,133	217,488
1089	통 신 케이블 공	281,658	271,248	261,699	254,897
1090	무 선 안 테 나 공	219,758	210,980	203,950	197,143
1091	석 면 해 체 공	141,192	134,648	129,920	123,810

엘리트건설주식회사

우 0617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08길 21(현우빌딩5층) TEL : (02) 566-0191 / FAX (02) 566-0291

문서번호 : 엘림중량 제 2018 - 120호

시행일자 : 2018. 10. 17.

수 신 : 중량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참 조 :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2018. 10. 17	결 재 · 공 람		
	번호	No. 2018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품질관리자 인건비 변경 실정보고의 건.

1. 귀 사업관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와 계약체결한(2017. 09. 12.) “중량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공통부대공 中 품질관리자 인건비가 누락되어 첨부와 같이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품질관리자 인건비 변경 실정보고서

----- 1부



중량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엘 리 토 건 설 주 식 회 사

현장대리인 김 봉



중량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실 정 보 고 서

[품질관리자 인건비 변경의 건]

2018. 10.

엘림토건(주)

목 차

1. 실 정 보 고 사 유 서
2. 실 정 보 고 내 역 서
3. 대 가 산 출 근 거
4. 관 련 자 료

실정보고사유서

□ 현장명 : 중량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 제 목 : 품질관리비 변경의 건.

가. 실정보고 사유 및 내용

1. 현 황

- 1) 원설계 공통부대공에 품질시험비만 반영되어 있음.
- 2)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품질관리자의 인건비가 누락되어 있음.
- 3) 선임 품질관리자의 인건비는 운영 및 배치기간에 따라 월단위로 정산하며 감독관의 확인에 따라 내역에 반영.

2. 관련근거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품질관리비는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로 나뉘는데 품질관리활동비 1번 항목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를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할수 있음.

3. 검토 내용

검토항목	당초	변경	비고
품질관리비	미반영	2017년 10월 ~ 2019년 11월 (26개월)	초급기술자 (당 현장기준)

2018년도

중량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정보고 내역서
(품질관리자 인건비 변경의 건)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 3길 64 일원(중량물재생센터 內)
공사개요 토목공사: 1식, 건축공사: 1식, 조경공사: 1식
공 종 공통부대공 中 품질관리자 인건비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도급 공사 비	공급가액		78,600,000	78,600,000	
	부가세액		7,860,000	7,860,000	
	계		86,460,000	86,460,000	
도급자 관급자재비					
이 전 비					
총공사비			86,460,000	86,460,000	

단위(원)

공 사 원 가 계 산 서(토목,건축,조경-총차분)

공 사 명 : 동량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50억~300억 미만(13~36개월)

구 분		공사비 계	구성비	비 고	증감	단면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0	28.%		0	당초
	직 접 재 료 비	0	28.%			변경
	간 접 재 료 비				0	당초
	간 접 재 료 비					변경
	소 계	0	28.%		0	당초
소 계	0	28.%			변경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0	31.9%		0	당초
	직 접 노 무 비	0	31.9%			변경
	간 접 노 무 비	0	3.1%	(직접노무비) x 9.7%	0	당초
	간 접 노 무 비	0	3.1%	(직접노무비) x 9.7%		변경
	소 계	0	35.%		0	당초
소 계	0	35.%			변경	
사 원 가 비	산 출 경 비	0	6.6%		67,743,475	당초
	산 출 경 비	67,743,475	6.6%			변경
	산 재 보 험 료	0	1.36%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9%	0	당초
	산 재 보 험 료	0	1.36%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9%		변경
	고 용 보 험 료	0	0.31%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89%	0	당초
	고 용 보 험 료	0	0.31%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89%		변경
	건 강 보 험 료	0	0.54%	(직접노무비) x 1.7%	0	당초
	건 강 보 험 료	0	0.54%	(직접노무비) x 1.7%		변경
	연 금 보 험 료	0	0.79%	(직접노무비) x 2.49%	0	당초
	연 금 보 험 료	0	0.79%	(직접노무비) x 2.49%		변경
	퇴 직 공 제 부 금 비	0	0.73%	(직접노무비) x 2.3%	0	당초
	퇴 직 공 제 부 금 비	0	0.73%	(직접노무비) x 2.3%		변경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0	0.04%	(건강보험료) x 6.55%	0	당초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0	0.04%	(건강보험료) x 6.55%		변경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0	1.42%	[(재료비+직접노무비) x 1.97%] x 1.2	0	당초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0	1.42%	[(재료비+직접노무비) x 1.97%] x 1.2		변경	
기 타 경 비	0	4.35%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	당초	
기 타 경 비	0	4.35%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변경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0	0.05%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 0.075%		당초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50,807	0.05%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 0.075%		변경	

공 사 원 가 계 산 서(토목,건축,조경-총차분)

공 사 명 : 중량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50억~300억 미만(13~36개월)

구 분		공사비 계	구성비	비 고	증감	당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0	0.27%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0.41%	277,748	당초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277,748	0.27%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0.41%		변경
	환경보전비	0	0.33%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 0.5%	338,717	당초
	환경보전비	338,717	0.33%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 0.5%		변경
	소 계	0	16.7%		68,410,747	당초
	소 계	68,410,747	16.7%			변경
계	0	79.7%		68,410,747	당초	
계	68,410,747	79.7%			변경	
일반관리비	0	4.4%	(재료비+노무비+경비) x	3,078,483	당초	
일반관리비	3,078,483	4.4%	(재료비+노무비+경비) x		변경	
안전점검비	0	0.06%	(순공무원가) x 0.08%	54,728	당초	
안전점검비	54,728	0.06%	(순공무원가) x 0.08%		변경	
이윤	0	6.7%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7,056,042	당초	
이윤	7,056,042	6.7%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변경	
공급가액	0	90.9%		78,600,000	당초	
공급가액	78,600,000	90.9%			변경	
부가가치세	0	9.1%	(총공무원가) x10%	7,860,000	당초	
부가가치세	7,860,000	9.1%	(총공무원가) x10%		변경	
도급공사비	0	100.0%		86,460,000	당초	
도급공사비	86,460,000	100.0%			변경	
관급자재비	0			0	당초	
관급자재비	0				변경	
시공전비				0	당초	
시공전비					변경	
총계	0			86,460,000	당초	
총계	86,460,000				변경	

대 가 산 출 근 거

인건비 대비표

공사명 : 중량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토목,건축,조경)

공종	규격	수량	단위	실지급단가		대한건설협회 (적용)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비고
				엘림토건(주)		2017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2017년도 임금실태조사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단가	금액	%	
4) 품질관리 활동비												
품질관리자 인건비	초급품질관리자	26	개월	4,340,000	112,840,000	2,524,940	65,648,440	58.2%	3,348,114	87,050,964	77.1%	실지급 대비
품질문서 작성 및 관리비용	인건비의 1%	1	식			656,484	656,484		870,510	870,510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인건비의 1%	1	식			656,484	656,484		870,510	870,510		
품질검사비	시험비의 1%	1	식			111,340	111,340		111,340	111,340		
그밖의 비용	품질관리 활동비의 1%	1	식			670,727	670,727		889,033	889,033		
근무일수 : 22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적용하여 주5일 시행을 가정)												